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방위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방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방산업체가 수출홍보 또는 연구개발을 위하여 방사청장의 승인을 받아 방산물자를 추가 생산·보유할 수 있도록 「방위사업법」이 개정(법률 제20996호, 2025. 7. 22. 시행)됨에 따라 신청·승인 등 관련 절차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한편, 방위사업 음부즈만 위촉·구성 제도를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등 방위사업 관련 업무체계·제도를 효율화 및 발전시키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방위사업 음부즈만 위촉·구성 제도 개선(안 제5조)
- 나. 대외군사판매 사업 대상 시험평가 제도 유연화(안 제27조)
- 다. 성능개량 사업의 계약·관리 업무 주체를 기품원으로 일원화(안 제37조)
- 라.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생산·보유 관련 절차 구체화(안 제55조)
- 마. 기품원 업무 수행범위 및 위탁범위 확대(안 제71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 없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9. 30. ~ 11. 1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구성한다”를 “구성하며, 법 제6조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연임”을 “중임”으로 한다.

제20조의2제1항 중 “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무기체계”를 “무기체계”로 한다.

제20조의3제2항,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소요검증실무회의의 구성·운영, 그 밖에 검증위원회의”를 “구성 및”으로 한다.

제26조제1항제2호의2를 삭제한다.

제27조제8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외국정부의 대외군사판매제도 등을 활용하여 국외로부터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

제37조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.

1.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성능개량 중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업에

대한 계약·관리와 이를 위한 조사·분석 업무

제5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41조의 규정”을 “법 제41조제1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·개발(일부 성능, 기능, 품질, 기술보호기법 적용 등 방산물자의 형상 또는 규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)하여 이를 보유하려는 방산업체는 방산물자 보유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산물자 생산·개조·개발 및 보유 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총 생산수량 및 수량별 생산목적
2. 생산 추진일정 및 작업공정계획
3. 보유 및 관리계획
4. 방산기술보호 대책 등

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의하여 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력화에 미치는 영향성, 신청 수량의 적정성, 생산 및 보유계획, 방산기술보호대책 등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신청한 방산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방산물자를 폐기하려는 방산업체는 방산물자 폐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폐기처분 세부 사유서

2. 폐기처분방안 및 세부 절차

⑤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의하여 폐기 신청을 받은 때에는 폐기 사유, 처분방안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폐기 여부를 신청한 방산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61조의9제3항제1호 중 “방산물자”를 “전력화지원요소 등 인접 품목을 포함한 방산물자를 양산하는 계약”으로 한다.

제64조제1항 중 “매 3년마다 전체 방산물자”를 “방산물자”로, “검토”를 “정기적으로 검토”로, “한다”를 “하며, 검토 주기와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”로 한다.

제7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목의 업무”를 “양산 및 운용유지 단계에서 군수품의 작전운용성능, 전력화 등의 일정 및 비용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설계상 오류 및 수정 등에 관한 형상내용의 확인 및 조정·통제”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 제3호가 목 중 “연구개발, 양산”을 “획득(구매를 통한 조달은 국내구매로 한정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“양산”을 “연구개발(시제품을 전력화하는 사업 중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업에 한정한다)과 양산”으로, “지정하는”을 “정하는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아. 무기체계(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 및 전투기 등 항공무기체계는 제외한다)의 연구개발단계 품질보증 수행과정에서 주요안전품목 등에 대한 체계안전성 관리

9.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방산업체가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방산물자의 관리 및 폐기에 대한 확인

10. 제64조제2항에 따른 방산분야별 국내 기술수준 및 방산물자별 생산가능 업체 유무 등 조사·분석 업무

별표 2 제1호가목 전단 중 “과태료 부과처분”을 “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”으로 하고, 같은 목 후단 중 “위반행위를 적발한”을 “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5조(옴부즈만의 구성 및 임기 등)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<u>구성한다</u> .		제5조(옴부즈만의 구성 및 임기 등) ① -----		<u>구성하</u>
				<u>며, 법 제6조제6항 각호의 어느</u>
				<u>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</u>
				<u>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</u>
				<u>한다</u> .
				<u><삭 제></u>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옴부즈만은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(이하 “비영리민간단체”라 한다)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한다.				
③ 삭 제				
④ · ⑤ (생 략)				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생 략)		제13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현		행과 같음)
② 법 제9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<u>연</u>		② -----		<u>중</u>
<u>임할 수 있다</u> .				<u>임-----</u> .
제20조의2(소요검증)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무기체계 등에		제20조의2(소요검증) ① -----		

대한 소요의 적절성 검증(이하 “소요검증”이라 한다)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 중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요를 대상으로 실시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20조의3(소요검증위원회) ① (생략)

②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, 부위원장은 국방부 전력정책국장이 되며, 위원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으로 하되, 필요한 때에는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.

1.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, 각군 참모차장 및 해병대 부사령관

2. 방위사업청 차장

3. 기획재정부·과학기술정보통신부·산업통상자원부 실·국

----- 무기체계 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0조의3(소요검증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<u>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</u> <u>의 장이 지정한 사람</u> 4. <u>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, 국방</u> <u>과학연구소 부소장 및 국방기</u> <u>술품질원 기술기획본부장</u> 5. 「<u>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</u> <u>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</u> <u>률</u>」에 따라 설립된 <u>정부출연</u> <u>연구기관 소속 임·직원</u>으로 <u>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</u> <u>사람</u> 6. <u>무기체계 등의 소요, 방위사</u> <u>업 또는 경제·산업에 관한</u> <u>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</u>한 사 <u>람</u> ④ (생 략) ⑤ <u>국방부장관은 검증위원회의</u> <u>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</u> <u>하여 소요검증 실무회의를 구성</u> <u>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u> ⑥ <u>검증위원회의 회의, 소요검</u> <u>증실무회의의 구성·운영, 그</u> <u>밖에 검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</u> <u>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</u> <u>다.</u> 제26조(절충교역의 기준) ① 법	④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② ----- 구성 및 ----- ----- -----. 제26조(절충교역의 기준) ① ----
--	--

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
절충교역을 추진하여야 하는 군
수품의 단위사업별 금액은 1천
만 미합중국달러 이상으로 한
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
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충교
역을 추진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~ 2. (생략)

2의2.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
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

3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제27조(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)

① ~ ⑦ (생략)

⑧ 법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
부분 후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
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할
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
같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⑨ (생략)

제37조(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
감독 등) ① 법 제32조제6항제1

-----.

-----.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3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7조(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)

① ~ ⑦ (현행과 같음)

⑧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외국정부의 대외군사판매제
도 등을 활용하여 국외로부터
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

⑨ (현행과 같음)

제37조(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
감독 등) ① -----

0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<신 설>

2. (생 략)

3. 「대외무역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전략 물자 판정과 관련된 기술지원 업무

② ~ ⑥ (생 략)

제55조(방위산업지원)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 또는 생산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술 또는 생산지원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, 각군 참모총장, 국방과학연구소장, 국방기술품질원장 또는 군정비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2. (생 략)

<신 설>

-----.

1.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성능 개량 중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·관리와 이를 위한 조사·분석 업무

2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55조(방위산업지원) ① -----
----- 법 제41조 제1항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방산 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·개발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(일부 성능, 기능, 품질, 기술보호기법 적용 등 방산물자의 형상 또는 규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)하여 이를 보유하려는 방산업체는 방산물자 보유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산물자 생산·개조·개발 및 보유 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총 생산수량 및 수량별 생산 목적

2. 생산 추진일정 및 작업공정 계획

3. 보유 및 관리계획

4. 방산기술보호 대책 등

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의하여 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력화에 미치는 영향성, 신청수량의 적정성, 생산 및 보유계획, 방산기술보호대책 등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신청한 방산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유하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61조의9(지체상금의 부과 등)

①·② (생략)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는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1. 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계약(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중 양산하는 계약은 방산물자에 한정한다)

고 있는 방산물자를 폐기하려는 방산업체는 방산물자 폐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폐기처분 세부 사유서

2. 폐기처분방안 및 세부 절차

⑤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의하여 폐기 신청을 받은 때에는 폐기 사유, 처분방안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폐기 여부를 신청한 방산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61조의9(지체상금의 부과 등)

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-----

전력화지원요소 등 인접 품목

2. (생략) ④ ~ ⑥ (생략) 제64조(방산물자지정의 취소) ① 방위사업청장은 매 3년마다 전체 방산물자에 대하여 지정의 존속 또는 취소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②·③ (생략) 제71조(업무의 위탁)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. 1.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성능개량 업무 중 무기체계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 및 관리 1의2. 2. 삭제 3. 4. (생략)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	<u>을 포함한 방산물자를 양산하는 계약---</u> 2. (현행과 같음) ④ ~ ⑥ (현행과 같음) 제64조(방산물자지정의 취소) ① ----- <u>방산물자</u>----- ----- <u>정기적으로 검토</u>----- <u>하며, 검토 주기와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.</u>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71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<삭 제></u> 3. 4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
--	---

한다.

1.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성능
개량 업무 중 무기체계의 품
질향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
장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계
약 및 관리

2. 법 제26조제3항 및 이 영 제3
2조제1항에 따른 형상의 관리
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
업무

가. 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
의 연구개발, 양산 및 운용
유지 단계에서 기성검사
등 형상의 관리에 관한 기
술지원

나.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
형상내용의 확인 및 조정
· 통제에 관한 업무 중 양
산 및 운용유지 단계에서
군수품의 작전운용성능,
전력화 등의 일정 및 비용

-----.

<삭 제>

2. -----

----- 양산 및 운용
유지 단계에서 군수품의 작전
운용성능, 전력화 등의 일정
및 비용 등에 영향을 미치지
않는 설계상 오류 및 수정 등
에 관한 형상내용의 확인 및
조정·통제

<삭 제>

<삭 제>

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
설계상 오류 및 수정 등에
관한 형상내용의 확인 및
조정·통제

3. 법 제28조에 따른 품질보증
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
업무

가. 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
의 연구개발, 양산 및 운용
유지 단계에서 기성검사
등 품질보증

나. (생략)

다. 양산 및 운용유지 단계에
있는 무기체계 및 방위사
업청장이 지정하는 전력지
원체계에 대한 검사조서의
발급 등 품질보증

라. 무기체계(제2조제4호에
따른 함정무기체계는 제외
한다) 연구개발사업 품질
보증 기술지원

마. 국외구매사업 품질보증
기술지원

바.·사. (생략)

<신설>

3. -----

--

가. -----
- 획득(구매를 통한 조달
은 국내구매로 한정한다)

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연구개발(시제품을 전력
화하는 사업 중 방위사업
청장이 정하는 사업에 한
정한다)과 양산 --- 정하
는 -----

<삭제>

<삭제>

바.·사. (현행과 같음)

아. 무기체계(전투함 등 함정
무기체계 및 전투기 등 항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전력정책과	
연 락 처	(02) 748 - 5674